분할 종료 보고의 공고

1. 이투스교육 주식회사(“분할 후 존속회사”)는 2022 년 2 월 15 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학원 운영, 인터넷 교육사업, 학습교재 제작, 출판 등 일체의 교육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이투스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분할 후 존속회사는 존속하기로 하고, 상법 제 530 조의 9 제 2 항에 따라 분할 후 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후 존속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이,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후 존속회사의 채무 중에서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승계하는 채무만을 부담하도록 하고, 분할 후 존속회사는 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, 분할 후 존속회사는 상법 제 530 조의 9 및 제 527 조의 5 에 따라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.

2. 또한 분할 후 존속회사는 (i) 2022 년 3 월 30 일 개최된 분할 후 존속회사의 이사회에서 분할계획서상 분할기일을 2022 년 4 월 15 일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 분할의 일정 변경을 승인하였고, (ii) 2022 년 4 월 11 일 개최된 분할 후 존속회사의 이사회에서 분할계획서상 분할기일을 2022 년 4 월 28 일로 변경하는 것을 비롯한 분할계획서의 변경을 승인하였으며, (iii) 2022 년 4 월 26 일 개최된 분할 후 존속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(i)과 (ii)의 경과로 변경된 분할의 일정 및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를 이투스에듀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 분할계획서를 승인하였고, (iv) 2022 년 4 월 26 일 개최된 분할 후 존속회사의 이사회에서 분할계획서상 분할기일을 최종적으로 2022 년 4 월 30 일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 분할의 일정 변경을 승인(일련의 분할절차를 총칭하여 “본건 분할”)하였습니다.

3. 위 결의들에 의하여 상법 소정의 분할절차를 완료하고 상법 제 530 조의 11, 제 527 조 제 4 항에 의거 분할보고의 창립총회에 갈음하여 2022 년 5 월 2 일 이사회 결의와 이 공고로서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, 이에 분할완료 사실을 각 주주들에게 이 공고로 보고합니다.

2022 년 5 월 2 일

이투스에듀 주식회사

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94 길 30 (역삼동)

대표이사 문 정 석